

# 충청북도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14
----------	-----

제출년월일 : 1994. . .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제안 사유

사업대상자를 시장군수도 선정 가능토록 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용자금의 지원대상에 작목반, 협의회등 농어민 조직단체도 포함하여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증대시키며, 결산보고 기일을 일반회계와 같이 조정하여 업무추진을 합리화 하고 직제개편에 의하여 회계 관직명 변경

## 주요 골자

- 사업대상자 선정시 도지사가 품목과 사업비를 시군에 배정하면 시장, 군수가 사업자를 결정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하여 행정 능률향상(안제6조제1항)
- 사업비의 지원시 개인별로 "일천만원 이상 이천만원 이내"로 하던것을 작목반등 농어민조직도 1억원 이내에서 지원 가능토록 추가함(안 제7조제2항).
- 회계 결산보고일을 "다음 회계년도 1월말"에서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결산 보고토록 하여 일반회계와 같이통일 (안 제12조제1항).
- 직제개편에 의하여 "농어촌개발국장"은 "농정국장"으로 농어촌개발과장"은 "농업정책과장"등으로 명칭 변경 (안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 개정 근거

충청북도직제규칙중 개정규칙 제2021호('94. 5.16)에 의함

예산 상황 : 해당 없음

기타 참고자료 : 별첨

# 충청북도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농어촌소득개발기금" 다음에 "(이하 개발기금"이라 한다)"를 삽입한다

제6조제2항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5조에 관한 사업비용자를 받지 않은 자를 우선한다)"를 삭제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가 시군별로 지원품목과 개발기금을 배정하면 시장·군수는 규칙에 의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제2항중 "이천만원 이내로 한다"를 "이천만원 이내로 하며 작목반등 농어민조직의 지원한도액은 1억원이내로 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농어촌개발국"을 "농정국"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중 "농어촌개발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농어촌개발국장"을 "농정국장"으로 하고, "다음 회계년도 1월말 까지"를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